

# 수업목적 보상금 제도 및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 1. 수업목적 보상금 정의

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일반 재산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저작물 이용 전,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함

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지도록 규정하였는데, 이것을 “수업목적보상금제도”라고 함

※ 서울캠퍼스(학사운영팀), 천안캠퍼스(교무팀)에서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기준액: 일반대 1,300원)으로 납부하고 있음

## 2. 수업의 주체 및 범위

가. 수업의 주체: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과 수업을 받는 재학생(휴학생 제외)

나. 수업 및 수업목적의 범위: ‘수업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학교 및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한정되며, “수업목적” 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3.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함.

구분	이용 요건
이용대상저작물	- 공표된 모든 저작물
이용주체	-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수업을 받는 학생에 한정 (학부모, 일반인 등은 제외되나 일회적인 공개수업 등에서는 예외)
이용방법	- 복제, 배포공연, 전시, 공중송신(방송 · 전송 · 디지털음성송신 등)

구분	이용 요건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이 수업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 한정되며 담당과목이나 학교가 다른 교원들 간 저작물 공유는 제외</li> <li>- 수업 전후, 예습과 복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li> <li>- 원격수업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li> </ul>
이용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실에 한정되지 않으며 장소적 제한은 없음</li> </ul>
일부분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li> <li>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 전부 이용이 불가피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이용이 가능</li> </ul>
허용되지않는 이용 (이용허락 대상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물의 일부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형태와 유사하게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파일로 제공하여 구매를 대체할 수 있는 이용</li> <li>-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제집, 참고서(워크북 등 포함)의 일부를 복제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이용</li> <li>- 교원에 의해 매 학기마다 같은 자료를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이용</li> <li>- 도서, 간행물, 영상 저작물의 일부분을 순차적으로 복제함으로써 누적되어 되어 결국 전체를 복제하게 되는 이용</li> <li>-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 1인당 1부, 수업을 받는 학생당 1부를 초과하는 복제</li> <li>- 판매되는 음원 · 영상 저작물을 시디롬(CD-ROM), USB메모리 등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배포하거나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이용</li> </ul>
저작인격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번역, 편곡,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거나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저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제호나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li> </ul>
출처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작물의 명칭, 저작자, 수록매체(도서명, 홈페이지 주소 등), 발행일자 등 출처를 누구나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한 권원에 의하지 않은 저작물(불법 저작물)은 이용할 수 없음</li> </ul>

#### 4.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방법 및 허용범위

##### 가. 이용방법

- 1) 수업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저작물의 이용방법은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에 의한 이용이며, 대여 및 2차 저작물 작성은 해당되지 않음
- 2)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원 저작물의 영어 가사나 시를 한국어로 번역하거나

대중가요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주할 수 있도록 컴퓨터용 음악으로 편곡하는 것과 같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은 저작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됨

- 3)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할수 있음

#### 나. 수업목적 이용 저작물의 허용 범위

- 1) 수업목적 상 허용되는 저작물 이용요건: ‘일부분의 이용’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교육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음
- 2) 어문 저작물
  - 논문, 소설, 수필, 시 등과 같은 어문저작물의 경우, 전체의 1% 이내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 그 어문저작물 전체의 10%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수업목적을 위하여 학술지의 논문 한편 또는 대학교재, 학술교재, 전문서적 등의 1장(1단원) 전체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가능. 그러나 2장 또는 10%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교원은 수업 또는 수업 준비에서 조사 또는 이용을 위해 직접 또는 요청하여 단행본의 일부,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논문, 그리고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에 포함된 차트, 그래프, 도표 등을 1부 복제할 수 있음.
  - 학생 1인당 1부씩 돌아가는 수만큼만 복제해야 하며, 교육상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통째로 복제하거나 여러 개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하나의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등 편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함
  - 학술서적이나 대학교재와 같은 어문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하여 교안(PT강의자료 포함)을 만드는 것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에 해당
  - 전체 도서를 요약하여 교안이나 PT강의 자료를 제작하여 복제,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3) 음악저작물

- 음악저작물 전체의 5%이내(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음악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을 여러 부 복제하는 것이 허용됨. 다만, 이 경우 학생 수를 초과하는 복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발췌부분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음악저작물’의 경우, 수업목적으로 음악저작물(악곡, 악보)을 복제하는 경우에 본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공연을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악보 등이 절판이어서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악보 등을 복제, 배포하여 수업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가능

### 4) 영상저작물

- 영상저작물 전체의 5%이내(최대 30초)를 이용하는 것은 공정이용의 대상이고, 영상저작물 전체의 20%(15분)를 초과하는 것은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단, 현실적으로 편집 등에 특정한 기술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여 영상저작물의 전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본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 영상저작물을 편집하여 수업자료로 가공하거나, PT에 삽입하여 활용하거나 영화 일정 부분을 반복 시청하여 영어 학습 등을 하는 것은 가능
- 교원이 동시중계방송 되거나 전송되는 영상저작물을 원 저작물 그대로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동시중계방송: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을 수신과 동시에 재방송하는 것

### 5) 이미지 저작물

- 사진 등과 같은 이미지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이용 가능

### 6) 참고사항

- 수업목적상 허용되는 (일반) 저작물 이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수업 목적” 이란 해당 ‘학교 및 교육기관’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기관장의 관리 감독 하의 대면수업 또는 이에 준하는 원격수업에 제공할 목적을 말함.
  - ‘교과과정 이외의 학습’ 또는 ‘일반인 대상 특별 강좌’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일반인과 졸업생 등에게 공개되는 K-MOOC, KOCW, 방통대 및 원격대학의 공개강좌, 졸업생의 반복시청과 ‘학교 및 교육기관’의 고시특강 등은 본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개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 대학 교수 등의 개별적인 연구 활동은 “수업 목적”에 포함되지 않음. 그러나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음.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함(저작권법 제30조)
  - ‘프로그램 저작물’은 본 기준 고시의 적용 대상이 아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 참조

## ※ 저작물 출처 표기

강좌 개발에 기본적으로 삽입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인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해 정확한 정보(출처, 저자, 일자 등)를 저작권법 표시방법을 준수하여 해당화면에 표시함.

### 전문서적, 학술논문 이용시

- 저자명, 책 또는 논문 제목,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 페이지)  
ex) 김윤명, **이러닝과 저작권,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3, 75쪽

### 번역 등 2차적 저작물 이용시

- 번역자, 번역물의 제목, 발행기관, 발행년도, (해당 페이지), (원 저자명), (원 저작물명), (원 저작물 발행기관), (발행년도 표시)  
ex) 박민식, **포스트모더니티의 새로운 조건**, 한물미디어, 2011, 42쪽, 데이비드

### 연설의 이용시

- 연설자성명, 연설이 행해진 때, 장소명시  
ex) 스티브잡스, 2005, **스탠포드 졸업식**

### 신문, 연속 간행물의 기사, 논설, 해설의 이용 시

- (기자명), 기사제목, 신문 혹은 연속 간행물 이름, 발행년월일, (해당 페이지 혹은 URL)  
ex) 윤대원, **SW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세분류 마련**, 전자신문, 2014.9.18.,  
<http://www.etnews.com/20140917000458>

### 영상 저작물의 이용 시

- (감독성명), 영상 저작물의 제목, 제작사, 제작년도  
ex) 최재영, **다큐 오늘**, EBS, 2014

### 인터넷 자료의 이용시

- 저자명, 제목, 발행년도, URL 등 표시, (이용일자)  
e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인문콘서트**, 2014, <http://www.arko.or.kr/>, 2014.9

## ※ 폰트 사용

폰트(font)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므로 무료 폰트 또는 합법적인 철자를 거쳐 구매한 유료 폰트를 사용하고 모든 폰트에 대해서는 저작권자가 정한 이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여 저작권 위배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